

수원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588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588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5021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동석

변론 종결 2024. 5. 24.

판결 선고 2024. 6.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50213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J생) 사이에 2021. 8.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2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21. 8.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5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9쪽 아래에서 1번째 줄부터 10쪽 "3. 결론" 바로 윗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20,000,000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8,000,000원,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94,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여 2024. 2. 27.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7층)가 32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날보다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더 가까운 날에 다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분의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160,000,000원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액은 29,000,000원($= 160,000,000\text{원} - 120,000,000\text{원} \times 1/2 - 48,000,000\text{원} \times 1/2 - 94,000,000\text{원} \times 1/2$)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62,635,504원보다 적은 위 2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이효진

판사김범준

판사박수미

별지